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16 선고 2022가단13467 판결 [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(선정당사자)B

변론 종결2023. 4. 4.

판결 선고2023. 5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각 1/2 지분에 관하여 1998. 4.
13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1998.경 C, 망 D와 사이에 원고가 이들이 분양하는 서울 동작구 E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고, 위 약정에 따라 C, 망 D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하였으며, C으로부터 1998. 4. 13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C 공유지분인 각 1/2를 이전받았다.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망 D가 원고에게 구두로 약정한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. 4. 13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/2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와 C, 망 D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장원정

별지